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6 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임미애·이소영·오세희

박해철 • 주철현 • 정을호

백승아 • 이용우 • 김한규

정성호 · 김정호 · 이병진

진성준 • 윤후덕 • 이연희

권칠승 · 임오경 · 민병덕

최기상 • 박수현 의원

(2291)

제안이유

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 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,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되며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적극적으 로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현행법은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 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 가능성을 어렵 게 하고 있음.

이에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

적으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보급을 활성화시켜 농가소 득을 높이고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(안 제3조).
- 다.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인당 발전설비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안 제4조).
- 라.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승인대상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업인으로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 상 읍·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민참여 조합이어야 함(안 제4조).
- 마. 영농태양광시설에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,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됨(안 제9조).
- 바.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의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(안 제11조).

- 사.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(안 제12조).
- 아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송전·배전 시설 지원, 기술개발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, 제16조 및 제19조).
- 자. 영농태양광 보급사업, 시범단지조성사업,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- 차. 지자체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,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(안 제17조).
- 카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 제한함(안 제18조).
- 타. 영농태양광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
 지역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(안 제20조)
- 파. 임대인은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 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(안 제21조).
- 하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 게 배분해야 함(안 제22조).

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농촌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
- 2. "농업인"이란 「농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
- 3. "태양에너지 발전설비"란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말한다.
- 4. "영농태양광 발전사업"이란 농업인이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 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태양에너 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해당 농지는 「농지법」 제2

조제1호의 농지로 보며, 농지에 설치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농 업생산보조시설로 본다.

- 5. "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"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이 법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 - ②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.

제2장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의 승인 등

- 제4조(사업계획의 승인 등) 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로 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이 되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1.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 상 읍·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된 자로서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업인일 것
 - 2.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태양 광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(이하 "주민참여조

합"이라 한다)일 것

-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.
- 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(제5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은 제외한다)에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「농지법」 제8조에 따른 농지취 득자격 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마다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인·허가 등의 의제)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, 허가, 신고(이하 이 조에서 "인·허가등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·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
 -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
 - 2. 「농지법」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
 - 3. 「수도법」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

수도 설치의 인가

- 4. 「자연공원법」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
- 5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(無緣墳墓)의 개장(改葬) 허가
- ② 제1항에 따른 인·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- 제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.
 - 1. 피성년후견인
 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3. 제8조(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
- 제7조(사업계획의 변경 등) 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

자는 해당 승인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· 군수 또는 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② 사업계획 변경절차,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)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 - 2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
 - 3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 획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
 - 4.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(65세 이상의 노령, 질병, 징집, 취학,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, 교도소·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 -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등의 수확량에 3년 연속으로 미달하 게 된 경우
 - 6. 부도 폐업 파산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상의 목적을

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제9조(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) 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자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(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 수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훼 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장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등

- 제10조(실태조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를 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, 관련 기업·연구기관 및 단체,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실태조사에 관한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,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정책자금의 지원·관리)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·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전기구매 등) ① 정부는 제4조에 따라 승인된 영농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.
 -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4조에 따라 승인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.
- 제13조(비용의 감면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발전설비 설치 및 송·배전설비 연결 등에 따르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수 있다.
- 제14조(시범사업 추진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태양광 보급사업, 시범단지조성사업,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제15조(컨설팅 등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컨설팅 등을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제16조(송·배전설비 등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 송·배전설비를 건설·운용·관리하는 기관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송·배전설비의 효율적 확충·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중 송·배전설비를 건설·운용·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한 송·배전설비 등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7조(영농태양광발전지구의 지정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태 양광발전사업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의 신청을 받아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지역주민, 농업인,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농태양발전지구의 지정·변경, 영 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,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, 관보의 게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매립농지에서의 태양광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)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에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 제한한다.
- 제19조(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 개발, 기술지도 등의 지원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적정 작물 연구
 - 2.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재배기술 개발
 - 3. 그 밖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연구·개발 성과의 이용·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제20조(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등) ① 영농태양광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 - 1.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
 - 2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
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조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렁으로 정한다.

제4장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농지의 임차인 보호 등

제21조(발전사업 농지의 임대차계약)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「농지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제22조(국가 등 소유 매립농지에서의 수익 배분에 관한 특례)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익의 배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
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장 보칙

- 제23조(감독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6장 벌칙

- 제24조(벌칙) 제4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25조(과대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는 제외한다.
 - 1.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한 자

- 2.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한 자
- 3.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